

공익신고처리내규 개정 요지

1. 개정이유

- 2015년 국민권익위 「부패방지 시책평가」에 반영
- 현재 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사례 및 반부패수범사례를 시행하여 공사 청렴도 성과 평가에 기여
- 우리공사도 국민권익위에서 선정한 모범사례를 사규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 청렴도 향상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(제 31 조 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사규관리규정 제6조제1항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 의 : 해당없음
- 절 차 :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·시행
- 기타 참고사항 :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 31 조 (공익신고센터의 설치) ①~② (생략)	제 31 조 (공익신고센터의 설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사장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관련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가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, 부당 요구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부조리신고 제도 및 신고경로를 입찰공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.
<신 설>	부 칙
	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